

성과상여금 지급대상·지급등급 및 지급액표

지급대상	지 급 등 급		지 급 액	
	등급	지 급 인 원	첫 번째 지급하는 성과상여금	두 번째 지급하는 성과상여금
○일반직공무원 중 6급 이하	S등급	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	별표 7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기준액(이하 이 표에서 "지급기준액"이라 한다)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	지급기준액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○별정직공무원 중 6급 상당 이하	A등급	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	지급기준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	지급기준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
○연구직공무원 중 연구사				
○전문경력관 중 나군 및 다군	B등급	평가 결과 상위 8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	지급기준액의 6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	지급기준액의 6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